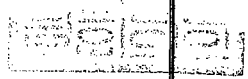


##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성 명	한 글	김 진 태	일본명	
	한 자	金 振 泰	이 명	雲 沼
출 생 연월일	미 상		사 망 연월일	미 상
본 격	미 상			
주 요 경 력	1904년 이전			
	1904년 ~ 1945년			
	1905.1.13	일진회 평의원 (元韓國一進會歷史, 卷之二, 6쪽)		
	1908.11.7	일본정부로부터 훈5등 서보장 받음 (서훈 권7, 외국인 5, 1908)		
	1908.12.29	일진회 평안북도지부회장 (같은 자료, 卷之六, 47쪽)		
	1909.1.20	대한노동회 회장 (황성신문, 1909년 1월 26일 1면)		
	1913.5.12	시천교 布德師 (至氣今至, 제2호 1913년 7월, 52쪽)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6호(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七, 문명사, 1911, 41~42쪽.

“(1909년 12월 3일) 하오 7시 30분에 본부 내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이용구가 설명하기를 현금 國과 民의 위태로운 형세가 시일이 절박한즉 부득불 우리 황실을 존영케 하고 우리 인민을 永厚福利케 하며 위로 정부로부터 아래로 사회에 이르기까지 더욱 발전하기로 목적하여 만세무궁의 기초를 확정하고 政合邦을 성립케 할 일을 우리 황상폐하께와 대일본 천황폐하의 天聽의 上徹하여 期圖 실행하자 하매 회중이 일치가결하다.”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七, 53-56쪽.

「전국동포에게 포고한 성명서」

“(중략) 아 우리 2천만 국민의 腦子에 충만한 조국정신을 분발하고 큰 소리를 질러 방금 일본 여론의 주창하는 근본적 해결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물결을 막고 파도를 잠자게 하고 우리 대황제 폐하와 대일본 천황폐하의 天聽을 꿰뚫는 一團精誠으로 哀訴하여 우리 황실의 만세 존송하는 기초를 공고히 하며, 우리 민족의 일등 대우하는 복리를 향유하여 정부와 사회를 더욱 발전하기로 주창하여 일대 정치기관을 성립할지면 우리 한국의 보호열등에 있는 수치를 해탈하고 동등정치의 권리를 획득하는 법률상 政合邦이라 하는 일문제이다. (중략)

음희 3년(1909) 12월 4일

일진회장 이용구

동 회원 백 만”

▶ 『황성신문』, 1909년 12월 5일 2면, 「一進議決」.

“再昨夜에 일진회 본부에서 임시대회를 열고 在京 회원 약 250명과 지방으로 上京한 회원 80여명 합계 330여명의 회원이 합동하여 한·일 양국에 관계된 서류를 대황제폐하게 봉정하고 통감부에 송치할 次로 起草하기를 결의한 후 폐회하였다더라.”

▶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5일 2면, 「합병한다네」.

“일진회에서는 재작일 밤에 회를 크게 하고 서울회원 이백오십명과 지방회원 칠십여명이 출석하여 한국과 일본을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작일에 대황제폐하게 상주문을 봉정하고 증미통감에게 건의서를 보내었다더라.”

▶ 흑룡회 편, 『일한합방비사』 하, 원서방, 1966, 527쪽.

“(중략) 그런데 이날 밤 총회에는, 총무원 및 지방의 평의원을 합하여 3백여 명이 출석하였다(이전부터 경성에 소집된 자 80여명). 그리하여 대체로 贊否를 물었더니, 반대자는 겨우 2명뿐이었다.”

▶ 『통감부문서』 10권, 24 통감상경중왕복서류, 「(21)菊池忠三郎에 관한 보고 이첩, 菊池忠三郎에 관한 건(憲機 제471호 사본)」.

“[부속서] 본일 桂후작으로부터 拙者에게 다음과 같은 內訓이 있었다.

一. 일진회 및 기타 합방의건서는 其筋을 受理하고 합방반대의건서는 모두 加할 것을 了解해야 함. (중략)

三. 일진회가 多年 親日的 操志의 苦節을 守하여 온건 통일한 행동을 취하고 양국을 위해 盡悴하여 온 성의는 능히 了得하고 있다. (중략)

명치 43년(1910) 2월 2일 杉山茂丸”

## 2) 합방청원운동 전후 김진태의 지위와 활동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六, 47쪽.

“(1908년 12월 29일) 평안북도지부회장 한국현이 依免한 代에 김진태를 선정하다.”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七, 57~59쪽.

“(1909년 12월 7일) 하오 3시에 임시총회를 열고 임시회장은 양재익으로 추천 昇座한 후 (중략) 부회장 홍금섭과 원임총무원 한석진, 윤길병의 퇴회청원서를 서기가 낭독 공포함 (중략) 李範喆이 特請하기를 부회장 추천위원은 口頭呼薦으로 2인만 추천한 후 滿數止薦하자고 시행함. 추천위원 김진태 박노학 (후략)”

▶ 후룡회 편, 『일한합방비사』 하, 729쪽.

“일진회해산비 분배표

(중략)

多年在京地方會員勤勞

일금 150원 김진태 (후략)”

▶ 『日韓合邦記念塔建設ニ就テ』, 1934, 15~17쪽, 23쪽.

「日韓合邦記念塔記」

“(전략) 합방의 주창자 일진회 회장 이용구는 속히 일한합방을 성취하여 부하 백만의 회원을 거느리고 만주로 이주하고, 그곳에 근거를 만들어 日滿聯邦을 실현하여 이를 아세아 전역에 미칠 것을 계획한 것으로서 이 일 모두를 송병준 및 우리들[후룡회-작성자]과 협의하였다. 한국의 여론을 지도하거나 彼我[일본과 한국-작성자] 在朝의 諸公을 움직이고 혹은 청원서를 제출하여 백방으로 고심하여 드디어 1910년 8월 29일의 조서를 맞기에 이른 것이다. (중략) 이에 일한합방기념탑을 건설하여 영구히 명치천황의 유업을 찬미하여 받들고 아울러 이용구·송병준 두 사람을 시장으로 당시 합방에 공헌한 朝野 同志의 이름을 새겨 탑 속의 석실에 들으로써 이를 영원히 전한다. (중략)

「일한합방기념탑 내 석실에 봉납된 공로자 방명」

일진회 도회장 및 평의원 기타 역원

김진태 (후략)”



2. <특별법> 제2조 제19호(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와 관련하

여

1)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훈포상

▶ 「한국 검사 윤갑병 외 105명 서훈 및 賜金の 건」, 『서훈』 권7, 외국인 5, 1908.

“위의 건을 삼가 재가한다.

명치 41년(1908년) 11월 7일

내각총리대신 후작 桂太郎

서훈 및 賜金 議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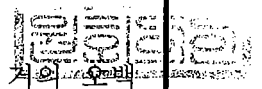
한국 검사 윤갑병 외 105명

위 사람들은 日露戰役 당시 우리 육군이 한국에 들어갔을 때 물자의 매수, 마차·인부의 징모로부터 숙소와 마구간의 설비, 기타 운수 사업을 돕거나 민심의 鎮撫에 노력하고, 적의 동정을 정찰하여 보고하고, 간첩을 선발하고, 도로·교량의 수리, 軍用電信의 감시, 위생사무 등을 지원하는 등 그 공적이 현저함으로써 부통감의 上奏를 심사하여 勳等 및 賜金額을 결정함이 아래와 같다.”

훈등 및 사금액	관직	位	한국훈등	제국훈등	씨명
勳五等瑞寶章	일진회 평의원				김진태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二, 130쪽.

“(1905년 7월 19일) [일진회 북진수송대-작성자] 회원의 來集이 畿의 功績인고로 고청룡으로 하여금 영솔하되 (중략) 김진태 김몽필로 하여금 飭務員을 위임하고 (후략)”



참 단

1. 김진태는 1909년 12월 일진회 평안북도지부회장으로서, 일진회의 합방청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일진회는 1909년 12월 3일 임시총회에서 합방을 청원하기로 의결하고, 12

월 4일 일진회 명의의 상소문과 대국민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당시 김진태는 일진회 평안북도지부회장으로서 이 같은 결정에 참여하였다. 또한 김진태는 1909년 12월 7일 합방청원에 반대한 부회장 홍금섭, 원임총무원 한석진·윤길병이 제출한 퇴회청원서를 수리한 일진회 임시총회에서, 부회장 추천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1910년 9월 12일 일진회가 해산될 당시 지방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년간 경성에서 활동한 공로가 인정되어 해산비 일금 150원을 분배받았다. 또한 김진태는 일진회 도지회장으로서 한일합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당시 한일합방의 주도세력이었던 흑룡회가 합방에 공헌한 일본 정객 및 조선인을 기념하기 위해 1934년 건립한 ‘일한합방기념탑’에도 기록되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6호 “을사조약·한일합방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2. 김진태는 1908년 11월 7일 러일전쟁에 협력한 공으로 일본정부로부터 훈5등 서보장을 받았다. 1905년 7월 러일전쟁 당시 김진태는 일진회원으로 조직된 북진수송대 향무원(餉務員)에 위임되어 일본의 침략전쟁에 협력하였다. 김진태의 훈5등 서보장은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9호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김진태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6호, 제19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12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